

# 제적

- 학칙 제28조

□

## 목차

- [1 제적의 종류](#)
  - [1.1 휴학 만료 제적](#)
  - [1.2 미등록 제적](#)
  - [1.3 타교 입학 제적](#)
  - [1.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경우](#)
  - [1.5 징계 제적](#)
  - [1.6 퇴학처분 제적](#)
  - [1.7 학사경고 제적](#)
  - [1.8 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](#)
  - [1.9 자퇴 제적](#)

## 제적의 종류

### 휴학 만료 제적

-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
  - 통상 휴학은 1년 단위로 승인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.

### 미등록 제적

-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
### 타교 입학 제적

- [편입학](#) 등이 이에 해당(2017.11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됨)

###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경우

### 징계 제적

-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

### 퇴학처분 제적

- [학생상벌규정](#)에 따라 처리된 경우

## **학사경고 제적**

- 학칙 41조 2항, 3항
-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
- 예외 :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에서 제외 ( [이해할 수없는학칙](#) )
-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해 [재입학](#)한 경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됨
  - 단,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으면 강제 [유급](#) 및 [휴학](#)을 실시

## **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**

- 다음학과는 별도의 기준을 둔다 : 의과대학, 간호학부,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

## **자퇴 제적**

스스로 신청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. 그냥 [자퇴](#)라고 부름.